

의안번호	제 963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2년 1월 10일

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96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2년 1월 10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'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'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 :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
- 위 치 : 청주시 소재
- 위탁기간 : 계약일부터 2024. 12. 31.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
- 사 업 비 : 382,396천원(국비 305,916^{80%}, 도비 76,480^{20%})*
 - * 보건복지부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업계획 근거
 - (인건비) 자립지원 전담인력 1인 36,765천원 × 6명 = 220,590천원
 - (사업비) 보호종료아동 사례관리(주거비, 교육비, 자격취득비 등) 월300천원 × 40명 × 12월 = 144,000천원
 - (운영비) 자립지원 전담인력 사무운영비 등 6명×연2,968천원 ≒ 17,806천원
- 시설내역 : 수탁법인이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실 설치 및 인력 채용
 - (시설) 수탁법인이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전용공간 확보
 - (종사자) 자립지원 전문가 6명

○ 위탁사무

- 보호~보호종료 전체단계에서의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(보호종료 5년 이내)
 - 맞춤형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운영
 - 사후관리계획 수립, 모니터링, 주기적상담, 시설연계 및 자립교육
 - 바람개비서포터즈(자조모임) 운영 : 사회적 지지체계구축, 자조역량 강화
 -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전담요원 지원 : 상담·정보제공 및 슈퍼비전 실시
 - 기타 자립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
- ※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(별첨)

3. 관계법령 : 붙임

- 「아동복지법」 제38조(자립지원) 및 제40조(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
 -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 - 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

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

I 추진근거

- 아동복지법 제38조(자립지원) 및 제40조(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)
-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보호종료아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책 발표(6대 추진과제, '21. 7.)

II 위탁개요

- 위 치 : 청주시 소재
- 위탁범위 :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전반
- 위탁기간 : 계약일부터 2024. 12. 31.
- 위탁기관 : 3년 이상 아동복지 관련 분야에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
- 사 업 비 : 382,396천원(국비 80%, 도비 20%) * 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변동 가능
- 위탁사무
 - 보호~보호종료 전체 단계에서의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(보호종료 5년 이내)
 - 맞춤형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운영
 - 사후관리계획 수립, 모니터링, 주기적상담, 시설연계 및 자립교육
 - 바람개비서포터즈(자조모임) 운영: 사회적 지지체계구축, 자조역량 강화
 -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전담요원 지원 : 상담·정보제공 및 슈퍼비전 실시
 - 기타 자립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

III

추진체계 및 절차

① 추진계획	• 추진계획 수립	'22. 1월
② 의회보고	• 민간위탁 의회보고(1월 임시회기 중)	'22. 1월
③ 수탁방법	• 수탁기관 모집 - 방법 : 공개모집(공고 15일) - 자격 :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	'22. 2~3월
④ 수탁심사	•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- 구성 : 6~9명 정도 - 심사 : 전문성, 사업실적, 사업계획 등 - 결정 : 최고 득점자 선정	'22. 3~4월
⑤ 협약공증	• 협약체결 및 공증	'22. 5~6월
⑥ 사무개시	• 위·수탁 사무개시	'22. 6~7월

IV

세부추진계획

1] 의회보고

- 동의시기 : '22. 1월 임시회기 중
- 동의근거 :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 ①항

<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 ①항 >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하고,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.

2] 수탁기관 모집 공고

- 공고기간 : '22. 2월(15일간)
- 공고방법 : 도 홈페이지 공고
- 선정방법 :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정(고득점자 선정)
- 신청자격
 - 3년 이상 아동복지 관련 분야에 활동 실적이 있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(지부 포함)를 둔 비영리법인
 -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운영 취소 내지 해지 처분을 받거나 최근 5년 이내 법인 또는 대표자가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은 제외
 - ※ 수탁 선정 후 발견 시에는 수탁 선정을 무효로 함
- 위탁조건
 - 관계법령·조례·지침 등을 준수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
 -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

※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추진중 : '20 ~ '22(사례관리사 1명)

③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

- 개최시기 : '22. 3 ~ 4월 *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준용
 - 구성인원 : 6 ~ 9명정도(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)
 - ※ 당연직 3(기획관리실장, 행정국장, 보건복지국장), 복지부 추천 1, 기타(전문가) 위촉
 - 심사항목 : 신청기관의 전문성, 사업계획 충실도 등
- 계획설명 : 신청기관 사업계획 설명
- 수탁자 선정 : 최고 득점 기관 수탁관리자 선정
 - 1개 법인이 신청 시 추가 공모(2개 이상의 법인이 신청하였을 때 심의)
 - 단, 추가 공모에도 1개 법인만이 신청할 경우 그 법인을 대상으로 심의 진행하고, 2개 이상의 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위원회에서 전부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 재공모
 - 선정기관이 협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선정
- 선정기준 : 위원별 배점결과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을 얻은 법인 중 최고 득점을 받은 법인 선정
 - ※ 1개 법인이 신청, 수탁기관 선정평가 시 위원별 합산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선정

④ 협약체결 및 공증

- 체결 시기 : '22. 5 ~ 6월
- 내 용 : 협약 체결 및 협약 내용 공증, 업무 인계·인수

IV 향후계획

-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: '22. 1월
- 수탁기관 모집 공고 : '22. 2월(15일간)
-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: '22. 3 ~ 4월
- 협약 체결 및 공증 : '22. 5 ~ 6월
- 개소 준비 및 위·수탁사무 개시 : '22. 6 ~ 7월

□ **아동복지법**

제38조(자립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
2.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(이하 “자산형성지원”이라 한다)
3.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4.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5.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,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0조(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,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,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. 15.>

□ **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**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
5. 그밖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무

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도지사는 제4조 제1항의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 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자 함

□ 추진근거

- 「아동복지법」 제38조(자립지원) 및 제40조(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, 제4조의2

□ 민간위탁 현황

- 위탁사무 :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
- 위탁기관 : 3년이상 아동복지 관련 분야에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
- 위탁기간 : 계약일부터 2024. 12. 31.
- 위탁금액 : 382,396천원(국비 80%, 도비 20%)
※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변동 가능
- 사업내용 :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

< 자립지원전담기관 주요기능 >

1. 보호~보호종료 전체 단계에서의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(보호종료 5년이내)
2. 맞춤형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운영
3. 바람개비서포터즈(자조모임) 운영 : 사회적지지체계구축, 자조역량 강화
4.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전담요원 지원 : 상담·정보제공 및 슈퍼비전 실시
5. 기타 자립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

□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의견

검 토 항 목	검 토 의 건	비고
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	○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갖춘 아동 관련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	
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○ 보호대상·보호종료아동의 전문적 사례관리,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아동 관련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	
③ 경제적 효율성	○ 수요대비 적절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관리운영할 예정이며, 수탁법인이 자립지원전담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전용공간을 확보할 예정으로 설치비 절감 등을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할 계획	
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 아동 분야의 전문지식, 인력,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도내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및 사업 전문화	
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 매년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목표 대비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사업성과 측정	
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·감독 권한이 있으며, 위·수탁 체결을 통한 운영방식 및 사업계획 관리를 통해 투명성 제고 *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(지휘·감독)	
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	○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전담 기관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내 보호아동·보호종료아동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○ 아동양육시설, 아동그룹홈, 가정양육 등 아동 복지시설과 지역자원을 연계 조정할 수 있는 행정력이 수반된 전담기관이 필요.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관할하는 기관 운영 필수(민간영역 서비스 제공 한계)	

□ 검토결과 : 적정

-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은 「아동복지법」 제38조(자립지원) 및 제40조(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)에 근거한 기관으로,
 - 보호대상·보호종료아동이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체계 마련 및 아동보호체계와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임
 - 해당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호종료아동 사례관리 등 전문 지식과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, 관련 법인의 인적·물적 자원연계 등 행정비용 절감으로 경제적 효과도 증대
- ⇒ **사업내용의 공공적 성격이 명확하고,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**

□ 향후 추진계획

-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제출·심의 : '22. 1월
- 수탁기관 모집 공고 : '22. 2월(15일간)
-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: '22. 3 ~ 4월
- 협약 체결 및 공증 : '22. 5 ~ 6월
- 개소 준비 및 위·수탁사무 개시 : '22. 6 ~ 7월